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: 2026 - 65호(2026. 7. 21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노후화된 감천항의 유허부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
(감천항 주변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
제공하고자 함)
3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849-1번지 지선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 : 291m²(2026. 7. 21. ~ 2041. 7. 20.)
5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 :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건설과)
 - 주 소 :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

2026. 7. 21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